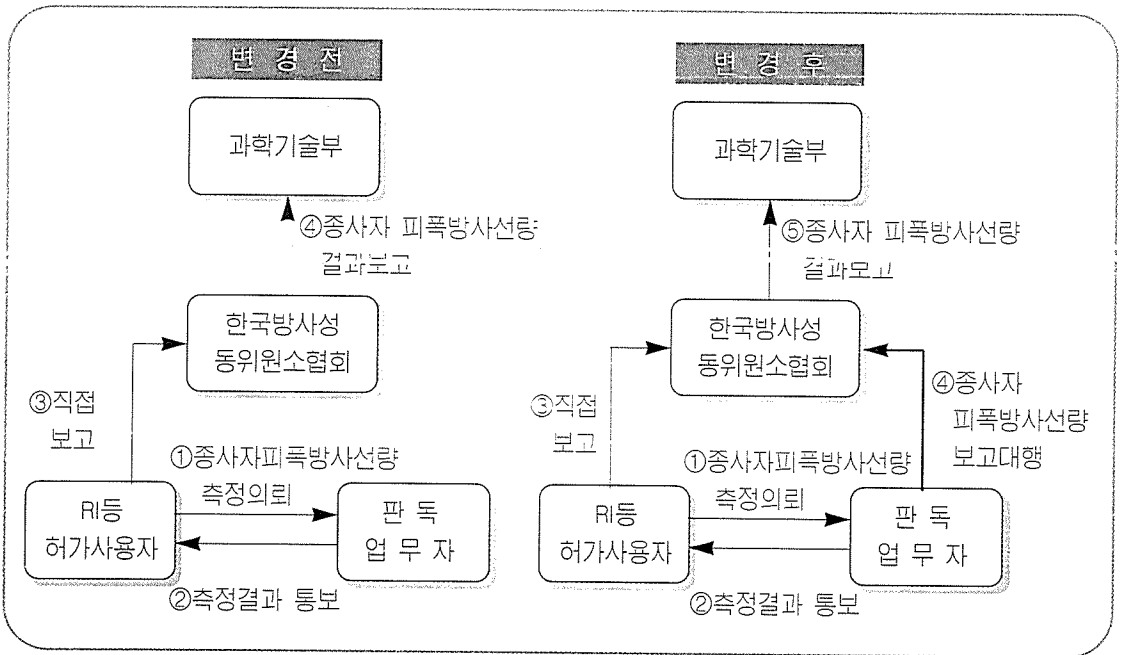


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 안내

보고대행관련

2001.7.25(수) 원자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선량의 보고대행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. 동 보고대행제도에 의하면 종전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보고를 관독업무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동 보고사항을 당 협회에 “직접보고” 하거나 관독업무자를 통하여 보고대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협회는 10월중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문을 작성하여 회원사에 알리고 4/4분기의 대상기록부터 보고대행을 접수받을 계획이다.

■ 절차도



■ 참고사항 (직접보고)

구 분	내 용
분기보고처	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
분기보고 시기	- 1/4분기 : 4월말 까지 - 2/4분기 : 7월말 까지 - 3/4분기 : 10월말 까지 - 4/4분기 : 다음연도 1월말까지
분기보고 양식	-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-2호 별지제4호서식(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)